

행 정 자 치 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비굴착 하수관거공사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2.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과에서 노후관 정비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과)에서는 택지지구 조성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수관로의 노후화와 침하 및 변형 등 현상으로 관로 누수에 의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 ○○, ○○, ○○택지지구, ○○ 매립지, ○○○ 매립지에 대하여 노후관 정비공사를 2015. 9. 2.부터 2015. 11. 30.까지 21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에서는 당○○, ○○, ○○, ○○택지지구, ○○ 매립지, ○○○ 매립지 노후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수관의 이음부분의 누수, 관 균열 및 부식 등에 의한 관 단면변화가 없는 구간은 비 굴착공법인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검토됨에 따라 2016. 3. 17. 공법선정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업체로부터 10개 업체(신기술 2개, 특허 8개) 기술제안 신청을 받아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으로 기술제안서에 의한 자문(심의)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 없이 자체 심사기준으로 부당하게 평가(10개 업체 : 신기술 2개, 특허 8개)한 사실이 있으며, 보편화된 유사 특허공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표 1】과 같이 지역업체에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반영 내용

지역	공 사 규 모	사업비 (백만원)	배정순위	업체명	비 고
총 6개소	총 사 업 량 L=5,174m	2,176			
○○	비 굴착보수 L=355m	134	3	○○○○	특허
○○ 매립지	비 굴착보수 L=575m	571	6	○○○○○ 개발	신기술
○○	비 굴착보수 L=1,083m	448	1	○○○○○	특허
○○	비 굴착보수 L=804m	347	2	○○건설	특허
○○○ 매립지	비 굴착보수 L=1,289m	267	4	○○산업	특허
○○	비 굴착보수 L=1,068m	409	5	○○○	특허

※ 자료구성 : 부산광역시 ○○○○과에서 작성 제출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특허·신기술 공법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등 절차를 걸쳐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